

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명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2.

발의자 : 성원환 · 김명국 · 이달호 ·

김선욱 · 배효임 · 배철현의원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회의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문 번호 변경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15조, 제71조, 제83조)
- 나.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 반영(안 제42조)
- 다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 반영(안 제52조의2)
- 라.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, 구성, 운영, 의견제출 규정 신설(안 제87조 ~ 제90조)

3.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”로 한다.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(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제63조제1항”을 “제7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항 중 “법 제66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7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를 삭제한다.

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표결할 경우 거수투표 또는 기립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3항)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,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41조제2항(종전의 제3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8조제1항 전단 중 “일반”을 “주민”으로 한다.

제52조를 제51조의2로 하고, 제52조, 제52조의2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(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) ① 의장이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 등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소집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심사 등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52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의2를 준용한다.

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이

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제53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0조제1항 중 “법 제71조”를 “법 제91조”로 한다.

제82조제1항 중 “법 제86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법 제83조”를 “법 제95조”로 한다.

제85조 및 제86조를 각각 제89조 및 제90조로 하고,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5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)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)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·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.

1. 정당의 당원

2.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

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위원이 질병, 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7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.

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88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)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

며,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(임시의장의 선거)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10조(임시의장의 선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또는 <u>결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(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---- 제72조제1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제19조의2(조례안예고) ① 의장은
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
에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
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
취지·주요 내용·전문을 공보
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
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20조의2(의안의 상정시기) 의장
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
원에게 배부된 후5일을 경과하
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
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
긴급을 요하거나 내용이 간단한
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1조(표결의 방법) ① 표결할
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
기립, 거수, 전자투표로 가부를
결정한다.

②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
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
에는 기명, 무기명, 전자투표로
표결한다.

③ 의장은 안전에 대한 이의 유

제19조의2(조례안예고) ① -----

--- 법 제77조제1항--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41조(표결의 방법) ① 표결할
경우 거수투표 또는 기립투표
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
결정한다. 다만, 법 제74조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<삭 제>

② -----

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 등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소집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심사 등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52조 (생략)

<신설>

제51조의2 (현행 제52조와 같음)

제52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의2를 준용한다.

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<신 설>

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
답변서 제출)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의원의 자격
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
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
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
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
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

② (생략)

제82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
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
징계대상의원(이하“징계대상
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
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
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(생략)

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
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위원

청구인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가
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
대표자 등”이라 한다)을 회의에
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질의·답
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제53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
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
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
답변서 제출) ① ---- 법 제91
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2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-
---- 법 제98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④·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, ----- 법 제95조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85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)

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)

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은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

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
공정성·전문성을 갖춘 사람으
로 위촉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.

1. 정당의 당원

2.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
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
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
경우

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
있다. 다만, 의장은 위원이 질병,
장기여행, 중도 사퇴, 품위
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
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
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
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
있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
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
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7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
영 등)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
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

<신 설>

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.

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88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)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

<신 설>

제85조 · 제86조 (생략)

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89조 · 제90조 (현행 제85조 및 제86조와 같음)